

제272회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동·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6. 12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·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6월 12일
전문위원 배 금 택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0 - 56
- 나. 제 출 자: 윤유선 의원 외 10명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6월 3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6월 10일

2. 제안이유

부모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관내 아동·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(안 제1조)
- 나. 아동·청소년, 사망한 부모의 채무, 법률지원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.(안 제2조)
- 다. 지원대상, 지원범위, 지원방법을 규정함.(안 제3조~제5조)

라.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 대장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6조)

마. 시행규칙 마련 근거를 규정함.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, 「청소년기본법」 제8조

나. 협조부서 : 교육청소년과

다. 입법예고(2020. 6. 5. ~ 6. 9.) 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「아동복지법」 제4조 및 「청소년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동·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

나. 주요 내용

-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아동·청소년, 사망한 부모의 채무, 법률지원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를 정함(안 제2조)
- 지원대상, 지원범위, 지원방법을 규정함.(안 제3조~제5조)

-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 대장에 관하여 규정(안 제6조)
- 시행규칙 마련 근거를 규정(안 제7조)

다. 종합 의견

- 현행 법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대상으로 보고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함에도
- 아동·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의 미비로 부모 빚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
- 본 제정 조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동·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아동·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
- 다만, 법률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등 다각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□ 아동복지법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3. 22.>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. 28., 2016. 3. 22.>

□ 청소년기본법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3. 24.]